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명지국제신도시 복합2블록, 3-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9.1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동주택은 2017.07.03.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순위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공동주택은 청약 조정대상주택이 아니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함)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118호」공동주택 입주자 선정 가점제 비율 공고에 의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 적용비율로 선정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제 63조 제1항의 의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서 경상남도 전역 및 울산광역시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 제7호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고령자 및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부적격당첨자 제한기간 강화(기존 3개월→1년으로 변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가입한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의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의 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7.10.16) 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의거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계약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85㎡ 초과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01.20. 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공동주택 공급가액,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비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외국인 계약을 포함)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www.myeongji-thesharp.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당사 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건축환경팀-12753호(2017.09.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지구 복합2블록(명지동 501-2번지) **▣ 대지면적 : 복합2블록 : 57,652.40㎡**

▣ 공급규모 :

- 복합2블록 : 지하3층~지상30층, 11개동 1,406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115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39세대, 비수도권 특별공급 13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9세대,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68세대 포함)

(단위 : ㎡, 세대)

구분	블록	공동주택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기준)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 추천)	경제 자유구역	비수도권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이전기관 종사자 등	소계		
민영주택	복합 2 블록	2017001074-01	80.7864A	80.7864	28.2784	109.0648	41.1812	150.2460	31.5518	118	11	11	11	11	11	3	5	63	55	4
		2017001074-02	84.9970A	84.9970	29.4911	114.4881	43.3276	157.8157	33.1963	756	75	75	75	75	75	22	37	434	322	26
		2017001074-03	84.9584B	84.9584	30.0707	115.0291	43.3079	158.3370	33.1812	292	29	29	29	29	29	8	14	167	125	10
		2017001074-04	99.9247	99.9247	35.2420	135.1667	50.9370	186.1037	39.0264	120	–	12	12	12	–	3	6	45	75	4
		2017001074-05	113.9349	113.9349	38.2813	152.2162	58.0788	210.2950	44.4982	120	–	12	12	12	–	3	6	45	75	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건축환경팀-12750호(2017.09.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지구 복합3-1블록(명지동 501-3번지) **▣ 대지면적 : 복합3-1블록 : 51,769.60㎡**

▣ 공급규모 :

- 복합3-1블록 : 지하3층~지상34층, 9개동 1,530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131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51세대, 비수도권 특별공급 15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3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3세대,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75세대 포함)

(단위 : ㎡, 세대)

구분	블록	공동주택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기준)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경제 자유구역	비수도권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이전기관 종사자 등	소계		
민영주택	복합 3-1 블록	2017001075-01	80.7864A	80.7864	28.0395	108.8259	43.0882	151.9141	26.9896	266	26	26	26	26	26	7	13	150	116	8
		2017001075-02	80.7864B	80.7864	28.0395	108.8259	43.0882	151.9141	26.9896	66	6	6	6	6	6	1	3	34	32	2
		2017001075-03	84.9970A	84.9970	29.2398	114.2368	45.3339	159.5707	28.3963	794	79	79	79	79	79	23	39	457	337	24
		2017001075-04	84.9584B	84.9584	29.8195	114.7779	45.3134	160.0913	28.3835	200	20	20	20	20	20	6	10	116	84	6
		2017001075-05	99.9247	99.9247	34.9465	134.8712	53.2958	188.1670	33.3835	102	–	10	10	10	–	3	5	38	64	3
		2017001075-06	113.9349	113.9349	37.9444	151.8793	60.7682	212.6476	38.0641	102	–	10	10	10	–	3	5	38	64	3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 당첨 및 동 · 호수 배정은 신청 블록과 주택형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X 0.3025 또는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주거 부분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였습니다.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합산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복합2블록)

(단위금액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시	1회(10%) 18.02.19	2회(10%) 18.07.16	3회(10%) 18.12.17	4회(10%) 19.05.17	5회(10%) 19.10.16	6회(10%) 20.03.16	입주지정일
80.7864A	118	205동1호	2층	1	37,742,000	246,758,000		284,500,000	56,90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56,900,000
			3층	1	37,742,000	252,858,000		290,600,000	58,12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58,120,000
			4층	1	37,742,000	258,958,000		296,700,000	59,34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59,340,000
			5-10층	6	37,742,000	263,558,000		301,300,000	60,26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60,260,000
			11-15층	5	37,742,000	268,158,000		305,900,000	61,18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61,180,000
			16-18층	3	37,742,000	271,158,000		308,900,000	61,780,000	30,890,000	30,890,000	30,890,000	30,890,000	30,890,000	30,890,000	61,780,000
			19-20층	2	37,742,000	280,758,000		318,500,000	63,70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63,700,000
			21층이상	10	37,742,000	283,858,000		321,600,000	64,32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64,320,000
		205동6호	1층	1	37,742,000	240,558,000		278,300,000	55,66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55,660,000
			2층	1	37,742,000	246,758,000		284,500,000	56,90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56,900,000
			3층	1	37,742,000	252,858,000		290,600,000	58,12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58,120,000
			4층	1	37,742,000	258,958,000		296,700,000	59,34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59,340,000
			5-10층	6	37,742,000	263,558,000		301,300,000	60,26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60,260,000
			11층	1	37,742,000	268,158,000		305,900,000	61,18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61,180,000
			12-15층	4	37,742,000	277,558,000		315,300,000	63,06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63,060,000
			16-20층	5	37,742,000	280,758,000		318,500,000	63,70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63,700,000
			21층이상	10	37,742,000	283,858,000		321,600,000	64,32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64,320,000
		211동1호	1층	1	37,742,000	240,558,000		278,300,000	55,66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27,830,000	55,660,000
			2층	1	37,742,000	246,758,000		284,500,000	56,90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56,900,000
			3층	1	37,742,000	252,858,000		290,600,000	58,12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58,120,000
			4층	1	37,742,000	258,958,000		296,700,000	59,34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59,340,000
			5-10층	6	37,742,000	263,558,000		301,300,000	60,26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60,260,000
			11-14층	4	37,742,000	268,158,000		305,900,000	61,18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61,180,000
			15층	1	37,742,000	277,558,000		315,300,000	63,06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63,060,000
			16-20층	5	37,742,000	280,758,000		318,500,000	63,70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63,700,000
			21층이상	10	37,742,000	283,858,000		321,600,000	64,32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64,320,000
		211동6호	2층	1	37,742,000	246,758,000		284,500,000	56,90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56,900,000
			3층	1	37,742,000	252,858,000		290,600,000	58,12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29,060,000	58,120,000
			4층	1	37,742,000	258,958,000		296,700,000	59,34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29,670,000	59,340,000
			5-9층	5	37,742,000	263,558,000		301,300,000	60,26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60,260,000
			10층	1	37,742,000	272,858,000		310,600,000	62,120,000	31,060,000	31,060,000	31,060,000	31,060,000	31,060,000	31,060,000	62,120,000
			11-15층	5	37,742,000	277,558,000		315,300,000	63,06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31,530,000	63,060,000
			16-20층	5	37,742,000	280,758,000		318,500,000	63,70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63,700,000
			21층이상	10	37,742,000	283,858,000		321,600,000	64,32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32,160,000	64,320,000
84.9970A	756	201동1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6층	2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7-10층	4	39,709,000	284,691,000		324,400,000	64,88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64,880,000
			11-15층	5	39,709,000	289,691,000		329,400,000	65,88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65,880,000
			16-20층	5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1동2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8층	4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9-10층	2	39,709,000	284,691,000		324,400,000	64,88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64,880,000
			11-15층	5	39,709,000	289,691,000		329,400,000	65,88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65,880,000
			16층-20층	5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2동1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19층	4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0층	1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2동2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22층	2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3층이상	8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3동1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18층	3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19-20층	2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3동2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층	1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2층이상	9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4동1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19층	4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0층	1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4동2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22층	2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3층이상	8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5동2호	1층	1	39,709,000	250,991,000		290,700,000	58,14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58,140,000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19층	4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0층	1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5동4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층	1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2층이상	9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5동5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층	1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2층이상	9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84.9970A	756	206동4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7동4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층	1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1층이상	9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8동1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23층	3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4층이상	7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8동3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8동4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3층	3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4-15층	2	39,709,000	289,691,000		329,400,000	65,88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65,880,000
			16-20층	5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9동1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18층	3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19-20층	2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9동2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층	1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2층이상	9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9동4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20층	5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21-22층	2	39,709,000	286,191,000		325,900,000	65,18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32,590,000	65,180,000
			23층이상	8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10동4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6층	2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7-10층	4	39,709,000	284,691,000		324,400,000	64,88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64,880,000
			11-15층	5	39,709,000	289,691,000		329,400,000	65,88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65,880,000
			16-20층	5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11동2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층	1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17-20층	4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11동3호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5층	5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6-18층	3	39,709,000	282,991,000		322,700,000	64,54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64,540,000
			19-20층	2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11동5호	1층	1	39,709,000	250,991,000		290,700,000	58,14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58,140,000
			2층	1	39,709,000	257,391,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3층	1	39,709,000	263,791,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4층	1	39,709,000	270,191,000		309,900,000	61,98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61,980,000
			5-10층	6	39,709,000	274,991,000		314,700,000	62,94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31,470,000	62,940,000
			11-12층	2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13-15층	3	39,709,000	289,691,000		329,400,000	65,88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65,880,000
			16-20층	5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	1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206동2호 207동2호 210동2호	2층	3	39,709,000	266,591,000		306,300,000	61,26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61,260,000
			3층	3	39,709,000	273,191,000		312,900,000	62,58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62,580,000
			4층	3	39,709,000	279,791,000		319,500,000	63,9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63,900,000
			5-10층	18	39,709,000	284,691,000		324,400,000	64,88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64,880,000
			11-15층	15	39,709,000	289,691,000		329,400,000	65,88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65,880,000
			16-20층	15	39,709,000	292,991,000		332,700,000	66,54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33,270,000	66,540,000
			21층이상	30	39,709,000	296,291,000		336,000,000	67,2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84.9584B	292	205동3호	1층	1	39,691,000	240,709,000		280,400,000	56,08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56,080,000
			2층	1	39,691,000	246,909,000		286,600,000	57,32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57,320,000
			3층	1	39,691,000	253,009,000		292,700,000	58,54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58,540,000
			4층	1	39,691,000	259,209,000		298,900,000	59,78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59,780,000
			5-10층	6	39,691,000	263,809,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11-15층	5	39,691,000	268,409,000		308,100,000	61,62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16-20층	5	39,691,000	271,509,000		311,200,000	62,24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62,240,000
			21-23층	3	39,691,000	274,609,000		314,300,000	62,86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62,860,000
			24층이상	7	39,691,000	284,309,000		324,000,000	64,8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206동3호	2층	1	39,691,000	246,909,000		286,600,000	57,32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57,320,000
			3층	1	39,691,000	253,009,000		292,700,000	58,54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58,540,000
			4층	1	39,691,000	259,209,000		298,900,000	59,78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59,780,000
			5-10층	6	39,691,000	263,809,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11-15층	5	39,691,000	268,409,000		308,100,000	61,62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16-20층	5	39,691,000	271,509,000		311,200,000	62,24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62,240,000
			21-24층	4	39,691,000	274,609,000		314,300,000	62,86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62,860,000
			25층이상	6	39,691,000	284,309,000		324,000,000	64,8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208동2호	2층	1	39,691,000	246,909,000		286,600,000	57,32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57,320,000
			3층	1	39,691,000	253,009,000		292,700,000	58,54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58,540,000
			4층	1	39,691,000	259,209,000		298,900,000	59,78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59,780,000
			5-10층	6	39,691,000	263,809,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11-15층	5	39,691,000	268,409,000		308,100,000	61,62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16-20층	5	39,691,000	271,509,000		311,200,000	62,24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62,240,000
			21-25층	5	39,691,000	274,609,000		314,300,000	62,86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62,860,000
			26층이상	5	39,691,000	284,309,000		324,000,000	64,8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210동3호	2층	1	39,691,000	246,909,000		286,600,000	57,32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57,320,000
			3층	1	39,691,000	253,009,000		292,700,000	58,54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58,540,000
			4층	1	39,691,000	259,209,000		298,900,000	59,78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59,780,000
			5-10층	6	39,691,000	263,809,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11-15층	5	39,691,000	268,409,000		308,100,000	61,62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16-20층	5	39,691,000	271,509,000		311,200,000	62,24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62,240,000
			21-22층	2	39,691,000	274,609,000		314,300,000	62,86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62,860,000
			23층이상	8	39,691,000	284,309,000		324,000,000	64,8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211동4호	1층	1	39,691,000	240,709,000		280,400,000	56,08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56,080,000
			2층	1	39,691,000	246,909,000		286,600,000	57,32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57,320,000
			3층	1	39,691,000	253,009,000		292,700,000	58,54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58,540,000
			4층	1	39,691,000	259,209,000		298,900,000	59,78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59,780,000
			5-10층	6	39,691,000	263,809,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11-15층	5	39,691,000	268,409,000		308,100,000	61,62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16-19층	4	39,691,000	271,509,000		311,200,000	62,24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62,240,000
			20층	1	39,691,000	281,209,000		320,900,000	64,18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64,180,000
			21층이상	10	39,691,000	284,309,000		324,000,000	64,8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206동1호 207동1호 210동1호	2층	3	39,691,000	255,709,000		295,400,000	59,08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29,540,000	59,080,000
			3층	3	39,691,000	262,109,000		301,800,000	60,360,000	30,180,000	30,180,000	30,180,000	30,180,000	30,180,000	30,180,000	60,360,000
			4층	3	39,691,000	268,409,000		308,100,000	61,62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5-10층	18	39,691,000	273,209,000		312,900,000	62,58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31,290,000	62,580,000
			11-15층	15	39,691,000	278,009,000		317,700,000	63,54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63,540,000
			16-20층	15	39,691,000	281,209,000		320,900,000	64,18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32,090,000	64,180,000
			21층이상	30	39,691,000	284,309,000		324,000,000	64,8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207동3호 209동3호	2층	2	39,691,000	246,909,000		286,600,000	57,32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28,660,000	57,320,000
			3층	2	39,691,000	253,009,000		292,700,000	58,54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58,540,000
			4층	2	39,691,000	259,209,000		298,900,000	59,78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29,890,000	59,780,000
			5-10층	12	39,691,000	263,809,000		303,500,000	60,7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11-15층	10	39,691,000	268,409,000		308,100,000	61,62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16-20층	10	39,691,000	271,509,000		311,200,000	62,24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62,240,000
			21-24층	8	39,691,000	274,609,000		314,300,000	62,86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31,430,000	62,860,000
			25층이상	12	39,691,000	284,309,000		324,000,000	64,8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64,800,000
99.9247	120	201동3호	1층	1	46,683,000	264,924,545	26,492,455	338,100,000	67,62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67,620,000
			2층	1	46,683,000	271,651,818	27,165,182	345,500,000	69,10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69,100,000
			3층	1	46,683,000	278,470,000	27,847,000	353,000,000	70,6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70,600,000
			4층	1	46,683,000	285,197,273	28,519,727	360,400,000	72,08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72,080,000
			5-10층	6	46,683,000	290,288,182	29,028,818	366,000,000	73,2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73,200,000
			11층	1	46,683,000	295,288,182	29,528,818	371,500,000	74,30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74,300,000
			12-15층	4	46,683,000	305,742,727	30,574,273	383,000,000	76,6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76,600,000
			16-20층	5	46,683,000	309,288,182	30,928,818	386,900,000	77,38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77,380,000
			21층이상	10	46,683,000	312,742,727	31,274,273	390,700,000	78,14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78,140,000
		202동3호 203동3호 204동3호	1층	3	46,683,000	264,924,545	26,492,455	338,100,000	67,62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67,620,000
			2층	3	46,683,000	271,651,818	27,165,182	345,500,000	69,10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69,100,000
			3층	3	46,683,000	278,470,000	27,847,000	353,000,000	70,6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70,600,000
			4층	3	46,683,000	285,197,273	28,519,727	360,400,000	72,08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36,040,000	72,080,000
			5-10층	18	46,683,000	290,288,182	29,028,818	366,000,000	73,2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73,200,000
			11-15층	15	46,683,000	295,288,182	29,528,818	371,500,000	74,30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37,150,000	74,300,000
			16-20층	15	46,683,000	298,651,818	29,865,182	375,200,000	75,04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75,040,000
			21-23층	9	46,683,000	302,106,364	30,210,636	379,000,000	75,8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75,800,000
			24층이상	21	46,683,000	312,742,727	31,274,273	390,700,000	78,14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78,140,000
113.9349	120	201동4호	1층	1	53,228,000	308,429,091	30,842,909	392,500,000	78,50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39,250,000	78,500,000
			2층	1	53,228,000	316,247,273	31,624,727	401,100,000	80,220,000	40,110,000	40,110,000	40,110,000	40,110,000	40,110,000	40,110,000	80,220,000
			3층	1	53,228,000	324,156,364	32,415,636	409,800,000	81,96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81,960,000
			4층	1	53,228,000	331,974,545	33,197,455	418,400,000	83,68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83,680,000
			5-10층	6	53,228,000	337,883,636	33,788,364	424,900,000	84,98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84,980,000
			11-15층	5	53,228,000	343,701,818	34,370,182	431,300,000	86,26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86,260,000
			16-20층	5	53,228,000	347,701,818	34,770,182	435,700,000	87,14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87,140,000
			21층이상	10	53,228,000	351,610,909	35,161,091	440,000,000	88,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88,000,000
		202동4호 203동4호 204동4호	1층	3	53,228,000	297,701,818	29,770,182	380,700,000	76,14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76,140,000
			2층	3	53,228,000	305,338,182	30,533,818	389,100,000	77,82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77,820,000
			3층	3	53,228,000	312,974,545	31,297,455	397,500,000	79,50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79,500,000
			4층	3	53,228,000	320,610,909	32,061,091	405,900,000	81,18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81,180,000
			5-10층	18	53,228,000	326,247,273	32,624,727	412,100,000	82,42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82,420,000
			11-15층	15	53,228,000	331,974,545	33,197,455	418,400,000	83,68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83,680,000
			16-20층	15	53,228,000	335,792,727	33,579,273	422,600,000	84,52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42,260,000	84,520,000
			21층이상	30	53,228,000	351,610,909	35,161,091	440,000,000	88,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88,000,00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복합3-1블록)

(단위금액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시	1회(10%) 18.02.19	2회(10%) 18.07.16	3회(10%) 18.12.17	4회(10%) 19.05.17	5회(10%) 19.10.16	6회(10%) 20.03.16	입주지정일
80.7864A	266	301동6호 302동1호 302동6호 309동1호	2층	4	31,657,000	259,843,000		291,500,000	58,30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58,300,000
			3층	4	31,657,000	266,143,000		297,800,000	59,56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59,560,000
			4층	4	31,657,000	272,343,000		304,000,000	60,8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60,800,000
			5-10층	24	31,657,000	277,043,000		308,700,000	61,74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61,740,000
			11-15층	20	31,657,000	281,843,000		313,500,000	62,70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62,700,000
			16-20층	20	31,657,000	284,943,000		316,600,000	63,32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63,320,000
			21층이상	56	31,657,000	288,043,000		319,700,000	63,94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63,940,000
		306동1호	1층	1	31,657,000	245,043,000		276,700,000	55,34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55,340,000
			2층	1	31,657,000	251,143,000		282,800,000	56,56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56,560,000
			3층	1	31,657,000	257,143,000		288,800,000	57,76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57,760,000
			4층	1	31,657,000	263,243,000		294,900,000	58,98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58,980,000
			5-10층	6	31,657,000	267,843,000		299,500,000	59,90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59,900,000
			11-15층	5	31,657,000	272,343,000		304,000,000	60,8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60,800,000
			16-20층	5	31,657,000	275,443,000		307,100,000	61,42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61,420,000
			21-22층	2	31,657,000	278,443,000		310,100,000	62,02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62,020,000
			23층이상	12	31,657,000	288,043,000		319,700,000	63,94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63,940,000
		306동6호	1층	1	31,657,000	245,043,000		276,700,000	55,34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55,340,000
			2층	1	31,657,000	251,143,000		282,800,000	56,56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56,560,000
			3층	1	31,657,000	257,143,000		288,800,000	57,76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57,760,000
			4층	1	31,657,000	263,243,000		294,900,000	58,98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58,980,000
			5-10층	6	31,657,000	267,843,000		299,500,000	59,90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59,900,000
			11-15층	5	31,657,000	272,343,000		304,000,000	60,8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60,800,000
			16-19층	4	31,657,000	275,443,000		307,100,000	61,42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61,420,000
			20층	1	31,657,000	284,943,000		316,600,000	63,32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63,320,000
			21층이상	14	31,657,000	288,043,000		319,700,000	63,94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63,940,000
		307동6호	2층	1	31,657,000	251,143,000		282,800,000	56,56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56,560,000
			3층	1	31,657,000	257,143,000		288,800,000	57,76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57,760,000
			4층	1	31,657,000	263,243,000		294,900,000	58,98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58,980,000
			5-10층	6	31,657,000	267,843,000		299,500,000	59,90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59,900,000
			11-15층	5	31,657,000	272,343,000		304,000,000	60,8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60,800,000
			16-20층	5	31,657,000	275,443,000		307,100,000	61,42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61,420,000
			21-25층	5	31,657,000	278,443,000		310,100,000	62,02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62,020,000
			26층이상	9	31,657,000	288,043,000		319,700,000	63,94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63,940,000
		309동6호	2층	1	31,657,000	251,143,000		282,800,000	56,56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28,280,000	56,560,000
			3층	1	31,657,000	257,143,000		288,800,000	57,76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57,760,000
			4층	1	31,657,000	263,243,000		294,900,000	58,98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58,980,000
			5-10층	6	31,657,000	267,843,000		299,500,000	59,90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59,900,000
			11-15층	5	31,657,000	272,343,000		304,000,000	60,8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60,800,000
			16-20층	5	31,657,000	275,443,000		307,100,000	61,42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30,710,000	61,420,000
			21-24층	4	31,657,000	278,443,000		310,100,000	62,02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31,010,000	62,020,000
			25층이상	10	31,657,000	288,043,000		319,700,000	63,94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63,940,000
80.7864B	66	301동1호 307동1호	2층	2	31,657,000	259,843,000		291,500,000	58,30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29,150,000	58,300,000
			3층	2	31,657,000	266,143,000		297,800,000	59,56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59,560,000
			4층	2	31,657,000	272,343,000		304,000,000	60,8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60,800,000
			5-10층	12	31,657,000	277,043,000		308,700,000	61,74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61,740,000
			11-15층	10	31,657,000	281,843,000		313,500,000	62,70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62,700,000
			16-20층	10	31,657,000	284,943,000		316,600,000	63,32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31,660,000	63,320,000
			21층이상	28	31,657,000	288,043,000		319,700,000	63,94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63,940,000
84.9970A	794	301동2호 301동4호 301동5호 302동4호 303동1호 303동2호 307동2호 309동2호 309동3호	2층	9	33,307,000	271,193,000		304,500,000	60,90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60,900,000
			3층	9	33,307,000	277,693,000		311,000,000	62,2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62,200,000
			4층	9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5-10층	54	33,307,000	289,193,000		322,500,000	64,50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64,500,000
			11-15층	45	33,307,000	294,093,000		327,400,000	65,48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65,480,000
			16-20층	45	33,307,000	297,393,000		330,700,000	66,14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66,140,000
			21층이상	126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2동2호 302동5호	1층	2	33,307,000	264,593,000		297,900,000	59,580,000	29,790,000	29,790,000	29,790,000	29,790,000	29,790,000	29,790,000	59,580,000
			2층	2	33,307,000	271,193,000		304,500,000	60,90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30,450,000	60,900,000
			3층	2	33,307,000	277,693,000		311,000,000	62,2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62,200,000
			4층	2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5-10층	12	33,307,000	289,193,000		322,500,000	64,50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64,500,000
			11-15층	10	33,307,000	294,093,000		327,400,000	65,48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65,480,000
			16-20층	10	33,307,000	297,393,000		330,700,000	66,14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66,140,000
			21층이상	28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4동1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2층	2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3층이상	12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4동2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4층	4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5층이상	10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5동1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층이상	14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5동2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3층	3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4층이상	11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6동2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5층	5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6층이상	9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6동4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4층	4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5층이상	10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6동5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층	1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2층이상	13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7동4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6층	6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7층이상	8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7동5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3층	3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4층이상	11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8동1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층	1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2층이상	13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8동2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3층	3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4층이상	11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8동4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4층	4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5층이상	10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309동5호	2층	1	33,307,000	261,993,000		295,300,000	59,06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59,060,000
			3층	1	33,307,000	268,393,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4층	1	33,307,000	274,693,000		308,000,000	61,6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61,600,000
			5-10층	6	33,307,000	279,493,000		312,800,000	62,56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62,560,000
			11-15층	5	33,307,000	284,293,000		317,600,000	63,52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31,760,000	63,520,000
			16-20층	5	33,307,000	287,493,000		320,800,000	64,16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64,160,000
			21-26층	6	33,307,000	290,593,000		323,900,000	64,78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32,390,000	64,780,000
			27층이상	8	33,307,000	300,593,000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66,780,000
84.9584B	200	301동3호	2층	1	33,292,000	260,408,000		293,700,000	58,74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58,740,000
			3층	1	33,292,000	266,708,000		300,000,000	6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60,000,000
			4층	1	33,292,000	273,008,000		306,300,000	61,26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61,260,000
			5-10층	6	33,292,000	277,808,000		311,100,000	62,22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62,220,000
			11-15층	5	33,292,000	282,508,000		315,800,000	63,16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63,160,000
			16-20층	5	33,292,000	285,608,000		318,900,000	63,78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63,780,000
			21층이상	14	33,292,000	288,808,0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64,420,000
		302동3호	1층	1	33,292,000	254,108,000		287,400,000	57,48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57,480,000
			2층	1	33,292,000	260,408,000		293,700,000	58,74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58,740,000
			3층	1	33,292,000	266,708,000		300,000,000	6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60,000,000
			4층	1	33,292,000	273,008,000		306,300,000	61,26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61,260,000
			5-10층	6	33,292,000	277,808,000		311,100,000	62,22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31,110,000	62,220,000
			11-15층	5	33,292,000	282,508,000		315,800,000	63,16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31,580,000	63,160,000
			16-20층	5	33,292,000	285,608,000		318,900,000	63,78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31,890,000	63,780,000
			21층이상	14	33,292,000	288,808,0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64,420,000
		306동3호	1층	1	33,292,000	245,408,000		278,700,000	55,74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27,870,000	55,740,000
			2층	1	33,292,000	251,608,000		284,900,000	56,98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56,980,000
			3층	1	33,292,000	257,708,000		291,000,000	58,2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58,200,000
			4층	1	33,292,000	263,808,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5-10층	6	33,292,000	268,408,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11-15층	5	33,292,000	273,008,000		306,300,000	61,26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61,260,000
			16-20층	5	33,292,000	276,108,000		309,400,000	61,88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61,880,000
			21-26층	6	33,292,000	279,108,000		312,400,000	62,48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62,480,000
			27층이상	8	33,292,000	288,808,0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64,420,000

84.9584B	200	307동3호	2층	1	33,292,000	251,608,000		284,900,000	56,98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56,980,000
			3층	1	33,292,000	257,708,000		291,000,000	58,2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58,200,000
			4층	1	33,292,000	263,808,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5–10층	6	33,292,000	268,408,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11–15층	5	33,292,000	273,008,000		306,300,000	61,26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61,260,000
			16–20층	5	33,292,000	276,108,000		309,400,000	61,88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61,880,000
			21–29층	9	33,292,000	279,108,000		312,400,000	62,48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62,480,000
			30층이상	5	33,292,000	288,808,0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64,420,000
		308동3호	2층	1	33,292,000	251,608,000		284,900,000	56,98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56,980,000
			3층	1	33,292,000	257,708,000		291,000,000	58,2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58,200,000
			4층	1	33,292,000	263,808,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5–10층	6	33,292,000	268,408,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11–15층	5	33,292,000	273,008,000		306,300,000	61,26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61,260,000
			16–20층	5	33,292,000	276,108,000		309,400,000	61,88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61,880,000
			21–25층	5	33,292,000	279,108,000		312,400,000	62,48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62,480,000
			26층이상	9	33,292,000	288,808,0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64,420,000
		309동4호	2층	1	33,292,000	251,608,000		284,900,000	56,98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56,980,000
			3층	1	33,292,000	257,708,000		291,000,000	58,2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58,200,000
			4층	1	33,292,000	263,808,000		297,100,000	59,42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59,420,000
			5–10층	6	33,292,000	268,408,000		301,700,000	60,34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30,170,000	60,340,000
			11–15층	5	33,292,000	273,008,000		306,300,000	61,26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61,260,000
			16–20층	5	33,292,000	276,108,000		309,400,000	61,88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61,880,000
			21–28층	8	33,292,000	279,108,000		312,400,000	62,48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62,480,000
			29층이상	6	33,292,000	288,808,0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64,420,000
99.9247	102	303동3호	1층	1	39,156,000	279,403,636	27,940,364	346,500,000	69,30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69,300,000
			2층	1	39,156,000	286,312,727	28,631,273	354,100,000	70,82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70,820,000
			3층	1	39,156,000	293,221,818	29,322,182	361,700,000	72,34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72,340,000
			4층	1	39,156,000	300,130,909	30,013,091	369,300,000	73,86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73,860,000
			5–10층	6	39,156,000	305,312,727	30,531,273	375,000,000	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75,000,000
			11–15층	5	39,156,000	310,494,545	31,049,455	380,700,000	76,14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76,140,000
			16–20층	5	39,156,000	314,040,000	31,404,000	384,600,000	76,92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76,920,000
			21층이상	14	39,156,000	317,494,545	31,749,455	388,400,000	77,68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77,680,000
		304동3호 305동3호	1층	2	39,156,000	269,949,091	26,994,909	336,100,000	67,22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67,220,000
			2층	2	39,156,000	276,676,364	27,667,636	343,500,000	68,70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68,700,000
			3층	2	39,156,000	283,403,636	28,340,364	350,900,000	70,18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70,180,000
			4층	2	39,156,000	290,040,000	29,004,000	358,200,000	71,640,000	35,820,000	35,820,000	35,820,000	35,820,000	35,820,000	35,820,000	71,640,000
			5–10층	12	39,156,000	295,130,909	29,513,091	363,800,000	72,76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72,760,000
			11–15층	10	39,156,000	300,130,909	30,013,091	369,300,000	73,86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73,860,000
			16–20층	10	39,156,000	303,494,545	30,349,455	373,000,000	74,6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74,600,000
			21–26층	12	39,156,000	306,858,182	30,685,818	376,700,000	75,34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75,340,000
			27층이상	16	39,156,000	317,494,545	31,749,455	388,400,000	77,68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38,840,000	77,680,000
113.9349	102	303동4호	1층	1	44,646,000	314,140,000	31,414,000	390,200,000	78,04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78,040,000
			2층	1	44,646,000	321,958,182	32,195,818	398,800,000	79,76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79,760,000
			3층	1	44,646,000	329,685,455	32,968,545	407,300,000	81,46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81,460,000
			4층	1	44,646,000	337,503,636	33,750,364	415,900,000	83,18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83,180,000
			5–10층	6	44,646,000	343,321,818	34,332,182	422,300,000	84,46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84,460,000
			11–15층	5	44,646,000	349,230,909	34,923,091	428,800,000	85,76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85,760,000
			16–20층	5	44,646,000	353,140,000	35,314,000	433,100,000	86,62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86,620,000
			21층이상	14	44,646,000	356,958,182	35,695,818	437,300,000	87,46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87,460,000
		304동4호	1층	1	44,646,000	303,503,636	30,350,364	378,500,000	75,70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75,700,000
			2층	1	44,646,000	311,049,091	31,104,909	386,800,000	77,36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77,360,000
			3층	1	44,646,000	318,594,545	31,859,455	395,100,000	79,02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79,020,000
			4층	1	44,646,000	326,140,000	32,614,000	403,400,000	80,68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80,680,000
			5–10층	6	44,646,000	331,867,273	33,186,727	409,700,000	81,94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81,940,000
			11–15층	5	44,646,000	337,503,636	33,750,364	415,900,000	83,18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83,180,000
			16–20층	5	44,646,000	341,321,818	34,132,182	420,100,000	84,02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84,020,000
			21층	1	44,646,000	345,049,091	34,504,909	424,200,000	84,84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84,840,000
			22층이상	13	44,646,000	356,958,182	35,695,818	437,300,000	87,46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87,460,000
		305동4호	1층	1	44,646,000	303,503,636	30,350,364	378,500,000	75,70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75,700,000
			2층	1	44,646,000	311,049,091	31,104,909	386,800,000	77,36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38,680,000	77,360,000
			3층	1	44,646,000	318,594,545	31,859,455	395,100,000	79,02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39,510,000	79,020,000
			4층	1	44,646,000	326,140,000	32,614,000	403,400,000	80,68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80,680,000
			5–10층	6	44,646,000	331,867,273	33,186,727	409,700,000	81,94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81,940,000
			11–15층	5	44,646,000	337,503,636	33,750,364	415,900,000	83,18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41,590,000	83,180,000
			16–20층	5	44,646,000	341,321,818	34,132,182	420,100,000	84,02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84,020,000
			21–22층	2	44,646,000	345,049,091	34,504,909	424,200,000	84,84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84,840,000
			23층이상	12	44,646,000	356,958,182	35,695,818	437,300,000	87,46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43,730,000	87,460,000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통사항

- 2009. 4. 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득한 분양가격이며,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가격차등을 두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85㎡ 초과하는 주택형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3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입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 군인 · 중소기업근로자 등) / 경제자유구역 / 비수도권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주택 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1.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 · 장소

구 분	특별공급 신청 일시 (복합2, 3–1블록 동일)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일시 (복합2, 3–1블록 동일)	장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17. 09. 19 (화) [10:00~16:00]	2017. 09. 20 (수) [19:00 이후]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견본주택 방문신청 [*일반인 입장 불가 및 견본주택 관람 불가(청약신청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비수도권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17. 09. 20 (수) [10:00~16:00]	2017. 09. 20 (수) [19:00 이후]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2017. 09. 19 (화) [09:00~17:30] ~ 2017. 09. 20 (수) [09:00~16:00]	2017. 09. 20 (수) [19:00 이후]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청약신청(www.housing.or.kr)

※ 단,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인하여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특별공급 신청자격(청약자격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일반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38조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39조 비수도권 특별공급, 제40조에 의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관련)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의 제3항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02.27에 공포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전산관리지정기관)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동 · 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금융결제원 :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합니다.

4.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 처리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블록간(복합2블록, 복합3–1블록) 중복신청 포함]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무주택 확인 각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하여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0.7864A	80.7864B	84.9970A	84.9584B	99.9247	113.9349	계
복합2블록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1	–	75	29	–	–	11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1	–	75	29	12	12	139
	비수도권 특별공급	11	–	75	29	12	12	13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	–	75	29	12	12	139
	신혼부부 특별공급	11	–	75	29	–	–	11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	22	8	3	3	39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5	–	37	14	6	6	68
	합 계	63	–	434	167	45	45	754
복합3–1블록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6	6	79	20	–	–	13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6	6	79	20	10	10	151
	비수도권 특별공급	26	6	79	20	10	10	15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	6	79	20	10	10	151
	신혼부부 특별공급	26	6	79	20	–	–	13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1	23	6	3	3	43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13	3	39	10	5	5	75
	합 계	150	34	457	116	38	38	833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추천 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 합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4조,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당해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② 추첨 순으로 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로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이 없는 주택은 2층을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8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해당업체(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①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②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당해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 추첨 당첨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하고 당첨자 추첨일 이후 당사에서 당첨자의 청약접수 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합니다.
③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3) 비수도권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연구소 근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의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은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당해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 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됩니다)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120%)이하여야 합니다.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민영에서는 일반적으로 5인기준으로 산정함(6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은 2010년부터 통계자료를 작성, 필요하지 않아 5인기준을 적용)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기타 본 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에 따름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동일 자격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합니다.(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소유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7)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5%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에 의한 대상자
①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② 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당해 혁신도시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단, 이전공공기관 제외)
④ 상기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하는 기관에 추천받는 자에 한하여 인정
※ 부산광역시 이전 13개 공공기관 추천기관[문서번호 : 부산광역시 대외협력담당관 – 6171 (2017.09.04)]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
※ 거주지역, 부산광역시 거주기간, 주택보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자산 및 소득 관계없이 이전기관 종사자 (1세대 1주택 기준)에게 1호에 한하여 공급 합니다. (단, 아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제외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특별공급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③ 특별공급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특별공급(모든 유형)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가.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해당 이전기관의 추천(대상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확인서')을 받은 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공급대상 기관이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하기로 확정된 날(지방이전계획 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인 후 착공일 중 가장 이른 날을 말한다)부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견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상기 제②호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포함한다)만 해당합니다. 단,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 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합니다.
④「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⑤ 상기 제②호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통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하며, 주택형 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등의 세대 구분 없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 당첨자 선정 유의사항
①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자격을 확인 · 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 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 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청약 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일주택(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포함)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각각 청약, 공급 유형별로 각각 청약, 1인 중복 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특별공급자격 상실,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④「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의거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계약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공동주택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APT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인 창구 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가입 은행에서, 2순위는 청약자의 거래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포함][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부산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자까지 확대해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청약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별표 2관련)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 85㎡이하 : 가점제 적용(가점제40%, 추첨제 60%), 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점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85㎡초과 : 추첨제 적용(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급**
①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없이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4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세명이상의 미성년자를 둔 다자녀가 있는 경우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청약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모집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단,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정)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 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 · 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 ·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의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예치금액 변경 즉시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 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접수장소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청약시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apt2you.com	–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신청시 은행계좌에서 자동출금(청약신청금액 이상 잔액 유지) ※ 인터넷 청약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총 15개 은행)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창구 청약시		가능한 청약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7.10.12(목)]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 2017.09.19(화) 10:00~16: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835
	신혼부부 / 비수도권 / 노부모부양	• 2017.09.20(수) 10:00~16:00		
	이전기관 종사자 등	• 2017.09.19(화) 09:00~17:30 • 2017.09.20(수) 09:00~16:00	•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housing.or.kr)
일반공급	1순위	• 2017.09.21(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 2017.09.22(금)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1인 1건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대리인 접수 포함) ※예) 1인 2건 이상 접수 불가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1순위, 2순위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단, 청약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해당 기관장의 인정 서류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직회사	
	○		사업자등록증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재직회사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서)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비수도권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인정서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에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를 입양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를 입양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방식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시 상기 구비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당첨자발표일 이후부터 정계약일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계약구비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당첨 적격여부를 필히 확인 받아야 합니다.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 비수도권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일시 : 2017. 09. 20 (수) 19:00 이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일시 : 2017. 10. 11 (수)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견본주택	• 일시 – 2017. 10. 16 (월) ~ 10.18 (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835)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일시 : 2017. 09. 20 (수) 19:00 이후 • 장소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게재(www.housing.or.kr)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7. 10. 11. (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myeongji–thesharp.co.kr)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이용기간	2017.10.11 ~ 2017.10.20 (10일간)	
전화 /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이용기간	2017.10.11 ~ 2016.10.20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 10. 11 (수)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부적격세대는 추후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청약신청자 중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청약신청자 중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 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V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7.10.16(월)~2017.10.18(수) [3일간, 시간 : 10:00~16:00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장소 :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견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견본주택 주소(약도) 및 문의번호 참조]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미납 또는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정당 당첨자 지정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비 고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특별공급 포함)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주택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 특별공급대상자확인서 (해당기관장의 인정서)	
	○		• 무주택서약서(혁신도시예정지역(부산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확인)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본인이외 모두 제3자)		○	• 본인이외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추가 제출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1통	
		○	• 계약자의 인감도장	
		○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당첨자"와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는 인터넷 청약방식으로 인하여 상기 계약 구비서류를 당첨자발표일 이후부터 정계약일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미리 계약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당첨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①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②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③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④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⑥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⑦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⑧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 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⑨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⑩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⑪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⑫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 ·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⑬ 공동주택의 대지면적이 차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⑭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승인도서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⑮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⑯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⑰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합니다. • 지정된 계약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납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574401-01-309190	대한토지신탁(주)

▣ 계약자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후 입주시 정산하며, 입주지정 최초일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며 기타사항은 대출금융기관의 계약자의 대출 약정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관련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로 보증건수 최대 4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각2건)에서 양기관 통합 2건으로 축소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2016.10.1일자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부터 적용)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① 입주예정일 : 2020년 08월 31일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사전 방문행사 실시 :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확인 대상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품,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③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Ⅵ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금액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0A	10,400,000	1,040,000	9,360,000
80B	10,400,000	1,040,000	9,360,000
84A	10,840,000	1,084,000	9,756,000
84B	10,220,000	1,022,000	9,198,000
99	12,350,000	1,235,000	11,115,000
113	13,070,000	1,307,000	11,763,000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잔금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국민은행	928337-00-001372	(주)포스코건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2개소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확장시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침실2(벽걸이형), 침실3(벽걸이형) 4개소가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의 설치면적, 외부 개구부 루버크기 및 세대당 전력조건에 따라 실외기는 최대 2개 이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냉매매립배관의 수만큼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입주후 에어컨 설치시 에어컨 전문업체 사전협의후 에어컨 구매 및 설치에 주의요함)

▣ 유상 옵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단위금액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	실내기	옵션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0A	옵션1	거실+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제조사 : 삼성 또는 LG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80B	옵션1	거실+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84A	옵션1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3,24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800,000	580,000	5,220,000	
84B	옵션1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3,24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800,000	580,000	5,220,000	
99	옵션1	거실+침실1	3,900,000	390,000	3,51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500,000	650,000	5,850,000	
113	옵션1	거실+침실1	3,900,000	390,000	3,51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7,200,000	720,000	6,48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 금액은 기존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어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설치 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안방 붙박이장

(단위금액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타입)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113	2,850,000	285,000	2,565,000	

■ 자녀방 일체형 가구(패키지)

(단위금액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타입)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0A,80B,84A,84B,99,113	1,750,000	175,000	1,575,000	

※ 타입에 따라서 자녀방 일체형 가구 크기,형태 및 수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단위금액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타입)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0A,80B,84A,84B,99,113	820,000	82,000	738,000	삼성(NZ63M3304CK) 또는 LG(BEH3G1)

■ 빌트인 김치냉장고

(단위금액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타입)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0A,80B,84A, 84B,99,113	1,250,000	125,000	1,125,000	삼성(RQ22K5L01EC) 또는 LG(R-D222WX/NX)

■ 주방팬트리

(단위금액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타입)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400,000	40,000	360,000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붙박이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 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가구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가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자녀방 패키지장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붙박이장은 별도의 자녀방 침실로 이동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전/가구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아래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국민은행	928337-00-001398	(주)포스코건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발주 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① 공통사항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집적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 선택 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마루, 타일, 발코니 타일(시멘트 몰탈 포함), 굽도리,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바닥씰, 디딤판), 재료분리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배관 및 시멘트 몰탈(난방 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우수선홈통 , 수공간 바닥 방수(보호몰탈 시공)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 일체(타일 등), 아트월(벽지, 타일, 판넬, 도장 등 일체 포함)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천장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발코니 천정도장, 소방시설, 세대환기시스템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직부등, 매입등, 센서등 일체)	배선/배관(스위치 및 콘센트 등)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정재(천정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타일, 욕실선반, 욕실 인테리어(젠다이 및 상판, 스위치, 콘센트, 거울 등 마감 일체)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상/하부장, 아일랜드장, 팬트리장 , 식당서재장, 톨장 등) 및 기구(상판, 가스쿡탑, 후드, 전기오븐, 자동식소화기 등) 일체, 기기류(악세사리 류),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TV, 다용도실 가구(상/하부 수납장, 손빨래볼, 세탁선반 등 일체)	주방 배기덕트, 설비배관(급수, 난방 등 매립배관 및 가스배관) 정보통신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창호	목창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일체) 및 욕실문, 내부PVC창호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포함), 디지털 도어락	외부창호,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 현관문, 소방관련 방화문
가구 및 기타	가구류 일체(신발장, 드레스룸 가구, 시스템가구 및 문짝,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주방 및 식당장, 현관창고, 각실 붙박이장, 수전류(발코니, 다용도실), 전동형 빨래건조대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월패드

※ 상기 품목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주택형별 기본제공 품목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③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별	구분	80A	80B	84A	84B	99	113
기본옵션(마이너스옵션 금액)	2블록	25,292,127	–	26,549,790	26,675,248	32,500,833	36,006,742
	3-1블록	26,052,920	26,052,920	27,348,290	27,477,829	33,400,853	37,043,361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입니다.(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Ⅶ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 · 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 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과 일반분양시설인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은 동일한 사업지에 대지경계(구획)이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을 공유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 · 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84A, 84B, 113)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80A, 80B, 99)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공통)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온돌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해 동질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건조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3-1BL)

- 80B 주택형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으로 층간소음, 진동, 결로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 · 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어린 자녀들이 임의로 사용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입주 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피난을 위한 공간이며, 창고 등의 공간이 아니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 전기, 통신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 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주방TV는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계약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외부여건(공통)

- 명지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전기, 가스, 난방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 명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명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공동주택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불일치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의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명지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내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내 학교설립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어 향후 학생 수용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청약 전에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적 확정측량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체납면적 추가발생으로 대지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남서측에 인접하여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 인접하여 명지톨게이트 및 을숙도대교, 북동측에 인접하여 명지IC 및 2번국도, 동측에 르노삼성대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명지지구 북측으로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는 대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명지지구 내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배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등에 입주자 협의 또는 기타 인허가관청 요구에 의해 추후 설치되는 보행자통로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해서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상업시설 및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소, 종교시설, 편의시설, 서부지원, 을숙도대교, 김해공항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명지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복합건물로서 각 세대는 인접 주동 및 인근 사업지로 인하여 일조 및 조망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 단지내의 여건 및 향후 주변 개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구조,지반,설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 ·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공조경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는 바닷가에 인접하여 해무 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세대 외부, 지하층에 결로수 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단지 인근 개발계획예정부지의 용도, 규모, 형태에 따라 현재 조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외부여건(2BL)

- 본 공동주택은 부지 북측에 34m도로, 동측에 23m도로, 남측에 23m도로, 서측에 34m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지 동측으로 서부지원 및 서부지청, 서측으로는 글로벌캠퍼스타운이 건립될 계획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음 및 교통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외부여건(3-1BL)

- 본 공동주택은 부지 북측에 호텔부지, 오피스부지, 23m도로, 동측에 23m도로, 남측에 연결녹지, 서측에 34m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지 동측으로 서부지원 및 서부지청, 복합개발용지, 서측으로는 의료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음 및 교통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명지지구 복합2블록, 복합3-1블록 주택건설사업으로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명지3초, 중학생은 명지중 또는 9학교군 내 중학교에 학생배치가 가능합니다.

※ 명지지구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신설 초,중학교 개교시 통학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내 초, 중, 고등학교는 당 사업지의 공동주택의 추가공급에 따라 신설될 예정이며, 학교 개교시기에 따라 입주 인근 학교로 분산 수용 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부산북부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부산북부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공통)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경관, 입면, 지붕 계획 등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획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소음, 채광, 음영, 반사광 등의 침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각 동별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경관조명, 수공간,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본 단지는 주거, 상업, 업무시설의 복합 건축물로 중심상업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관련 법상 일반주거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대비 일조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상복합 시설로서 단지내 인접한 주거동, 오피스 등과 인접한 부지(복합2블록, 복합3-2블록, 복합3-3블록)에 의해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외경관조명, 수공간,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공사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 주동 저층부 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장식물, 외부의 색채계획, 옥외시설물 및 경관조명 계획은 입주자 동의 없이 해당 관청 경관변경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옥탑장식물,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 결과 또는 시공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 등 설계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추진 및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분리수거공간, 쓰레기 집하장, 자전거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업무시설,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공항시설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인접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 ·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등으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블록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지하1~2층)이며, 3-1블록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지하 3개층(지하1~3층)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은 비주거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 주차장과 차량출입구 포함 완전 분리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모든 공동주택 동들이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 지하 커뮤니티시설 출입은 지상 출입 계단, 셔틀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 · 후 · 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는 배관 미구축 지역으로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일정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안정정인 가스공급을 위해 단지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역정압기, 가스배관 등)의 설치위치, 공사일정 및 설치방법 등은 미확정 사항으로 추후 사업주체와 가스공급업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카탈로그,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 이외의 사항(법적 변경 가능한 경우)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명지지구 내 · 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수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기 및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기반시설 보도와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도는 시공 중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계획되는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기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본 공사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마감재,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수증기, 진동 등으로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매,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합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외벽로고사인, 측벽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등), 필로티, 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문주, DA(Dry Area) 등 외부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분수, 물놀이장, 경관조명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통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단지내 판매시설의 옥상부 및 인접한 외부공간의 조경, 포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2BL)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남측/서측에 차량 진출입구 공동주택 2개소, 비주거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판매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동과 211동 사이에 문주가 설치될 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9동 1층에는 1층 규모의 어린이집, 206동 1층에는 1층 규모의 경로당, 208동 1층에는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207동 1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207과 208동의 전면에는 2개층(지하1~1층) 규모의 연회장이 위치하여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6, 207, 210, 211동은 동측 판매시설로 인한 시각적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211동 1층 세대는 남동측 인접 보행로(비상차량통로)의 높이가 세대바닥보다 높아 시각적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3, 207동 전면, 209동 전후면, 202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209동 1층에 어린이집/ 205, 206, 210동 전면, 208, 207동 후면, 211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됩니다.
- 204, 205, 203, 208동 인근에 잔디마당 및 키즈풀이 설치되며 209동 전면, 201, 202, 311동 인근 수공간이 설치됩니다. • 208동 1층에 1층 규모의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이 설치됩니다.
- 207동 1층에 게스트하우스, 207,208동 전면에 주민공동시설, 211동 지하층에 관리사무소 설치됩니다.
- 206, 207, 210, 209, 211동 동측에 지상26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2개층 규모의 판매시설 설치로 조망, 프라이버시 간섭이될 수 있어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201, 202, 203, 204동 서측 공개공지 및 공공조경, 보행자출입로가 설치되며 205, 206동 인근에 보행자출입로가 설치됩니다.
- 단지 서측 34m도로에 육교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6, 207, 210동 하부에 판매시설이 설치가 되며, 판매시설의 시설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수증기, 진동 등으로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4 ,201동 전면에 공개공지 설치/ 201, 202, 203, 204동 전면에 공공조경이 설치됩니다.
- 204, 205, 206동은 이사짐 주동 피로티 하부를 통하여 주동 입구로 운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소 불편 할 수 있어 계약체결전 충분히 확인 하시고 인할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209동 옥탑에는 옥상수조 및 기계실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11동 인근 판매시설 지붕에 냉각탑 설치됨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3-1BL)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동측에 차량 진출입구 공동주택 단독 1개소, 공동주택 및 비주거 통합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판매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1동과 309동 사이에 문주가 설치될 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1,307,309동은 동측 판매시설로 인한 시각적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5,306,307동은 북측 호텔/컨벤션 및 업무시설로 인한 시각적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8동 1층에는 1층 규모의 경로당, 304, 308, 303,302동 인접하여 1층 규모의 어린이집, 309동 1층에는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306, 307, 308, 309동인접하여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여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307, 309, 301동은 동측 판매시설로 인한 시각적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시설 옥상에 설치되는 실외기 소음, 조망간섭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304,305,306동 전면, 303,304동 후면, 308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304,308동 전면, 302동 측면에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301,302,303동 전면 인근에 옥외운동시설이 설치됩니다.
- 304,305,306,308동 인근에 잔디마당 및 키즈풀/ 308,309동 전면에 수공간이 설치됩니다. • 309동 지하1층에는 관리사무소, 지상1층에 1층 규모의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이 설치됩니다.
- 307동 1층 주민공동시설, 306, 307동 전면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됩니다. • 301, 309동 동측 2개층 규모의 판매시설 설치되며, 307동 동측 및 북측에 지상2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2개층 규모의 판매시설이 설치됩니다. • 303, 304, 305동 서측 공개공지 및 공공조경, 보행자 출입구 설치되며, 306, 307동 보행자출입로 및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됩니다.
- 305, 306, 307동은 이사짐을 주동 피로티 하부를 통하여 주동 입구로 운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소 불편 할 수 있어 계약시 충분히 확인 하시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308동 옥탑에는 옥상수조 및 기계실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공통)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가구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공급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 · 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폰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부장 하부에 주방액정TV가 설치 시 이로 인해 상부장에 주방액정TV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의 엔지니어드스톤의 시공시 발생되는 접합 이음매가 노출, 설치됩니다. • 전동형 빨래건조대 사용시 발코니 사이즈 및 형태에 따라 일부 벽체와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실외기실 천정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 ·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 및 크기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옥탑지붕,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됩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홀 대기인에 의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전면공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정된 공간으로 입주자가 점유 또는 임의로 휀스, 주차장, 쓰레기적치장등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유치원, 학원 등의 학생 수송을 위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으며, 정류장 등은 비주거 시설 입주자와 공동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설비 계획 등으로 인한 1층 필로티 반자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부지의 순차 개발 계획에 따른 공사상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의 실외기실 천정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 · 후 · 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정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저층부 판매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 전기, 통신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 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주방TV는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설치되며, 실시설계 시 배치됩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을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 전기통신함,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드레스룸과 신발장에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설은 사용승인 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예정입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기타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계획되는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 마감수준은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이며, 로비층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임. 또한, 기준층의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이며,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동 계단실 내부의 바닥마감은 지정타일, 벽마감은 지정도장으로 시공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택형타입의 경우 분양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타입으로 일괄시공되며 시공되는 타입은 그 시점의 선택현황 및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계약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줄어드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홈스타일 초이스(가구형태 선택, 평면선택 등)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합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중 단지 중앙의 물놀이장은 유아 물놀이장입니다. • 단지 내 외부 물놀이장은 준공 후 사용시 관리주체가 안전요원 등의 배치 및 안전, 보건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입주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가든은 텃밭 용도의 공간이며 사용세대, 범위, 용도 등은 입주후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사용할 공간이며 텃밭이외의 공간용도 준공 후 용도 변경 혹은 설계변경(시공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2BL)

- 본 공동주택은 최고 30층 높이의 고층건축물로 상부층에는 빌딩풍, 해풍, 역풍 등의 영향으로 일반 A/C 실외기(정속형)를 사용할 경우, 냉방성능저하 및 작동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 및 북서측 가각부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써 입주자가 점유 또는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201동과 211동은 인접부지의 호텔, 오피스, 판매시설 등에 의하여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간섭등의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201, 202, 203, 204동은 인근 외국교육기관에 개발 계획에 의하여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간섭등의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204, 205, 206동은 북측 복합시설에의한 조망, 프라이버시 간섭 발생될 수 있어 충분히 확인히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3-1BL)

- 본 공동주택은 최고 34층 높이의 고층건축물로 상부층에는 빌딩풍, 해풍, 역풍 등의 영향으로 일반 A/C 실외기(정속형)를 사용할 경우, 냉방성능저하 및 작동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B 타입세대 발코니1에 대피공간을 대신하여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으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좌측 상, 하단 내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써 입주자가 점유 또는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건축법 제43조」에 따라 공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301, 302, 303동 전면에 연결녹지와 상업시설, 주차장부지가 있어 향후 개발 계획에 의하여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간섭등의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업지와 인접하여 우측에 복합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교통, 조망, 프라이버시 간섭 발생될 수 있어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1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검토 기준	검토항목	적합여부	비 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설계조건 충족여부	적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7조 2항
	의무사항 준수여부	적합	

– 2블록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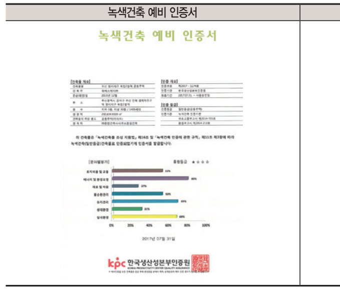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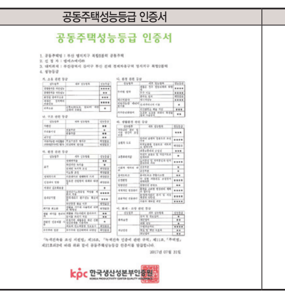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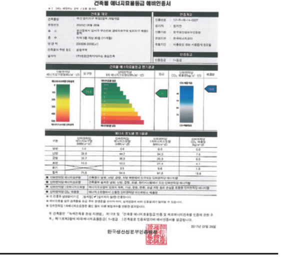

– 3-1블록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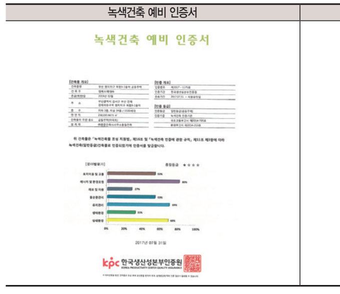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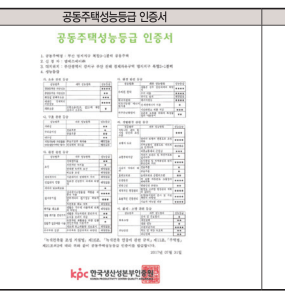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2블록	건축감리	㈜기하엔지니어링	5,022,050,000원	
	전기감리	㈜진일기술단	731,261,500원	
	소방 · 정보통신감리	(주)동일건축	687,500,000원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3-1블록	건축감리	건축사사무소 태백	5,170,828,300원	
	전기감리	㈜성우엔지니어링	728,438,742원	
	소방 · 정보통신감리	(주)동일건축	687,5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2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 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별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사전 추정가격으로 준공 시 소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내용(2블록)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53,746,378,744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1,476,467,285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4,875,443,465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60,098,289,494	
공사비	토목	30,111,845,906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137,800,889,075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27,489,898,821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37,058,653,483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37,842,536,365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270,303,823,650	
간접비	설계비	3,058,922,66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5,269,643,023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70,562,429,882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 · 가스 · 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78,890,995,565	
그 밖의 비용		59,739,191,29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469,032,300,000	

- 분양가격 공시내용(3-1블록)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8,296,474,774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1,326,445,526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4,728,744,344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54,351,664,644	
공사비	토목	33,426,526,191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152,969,865,818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30,515,957,932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41,138,031,342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42,008,202,689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300,058,583,973	
간접비	설계비	3,406,960,415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5,869,211,869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78,590,798,052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 · 가스 · 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87,866,970,336	
그 밖의 비용		62,671,481,047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504,948,7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내용

구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2블록	제 01282017-101-0013100 호	₩ 375,225,8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1블록	제 01282017-101-0013200 호	₩ 403,958,960,000	

1. 용어의 정의(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 "갑", 시공사 "병", 위탁자 엠에스에이(주)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을"은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 본 사업은 엠에스에이(주)가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엠에스에이(주)이고, 대한토지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엠에스에이(주) 및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전 발생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인 엠에스에이(주), 및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이 각사의 업무역할에 따라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별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엠에스에이(주)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엠에스에이(주)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엠에스에이(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본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엠에스에이(주)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명지국제신도시 복합 2, 3-1블록)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수분양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사)	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엠에스에이(주)	(주)포스코건설	(주)건물과사람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1901호 (재송동, 큐비이센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605호 (서초동, 강남미래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80111-1035591	1746111-0002979	110111-1826118

- **당사 홈페이지 : http://www.myeongji-thesharp.co.kr**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835**
- **분양문의 : 1644-905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관계법령을 우선함)

1644-9050

80㎡ / 84㎡ / 99㎡ / 113㎡ 총2,936세대

■ 시행사 : 대한토지신탁(주) ■ 위탁사 : 엠에스에이(주) ■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www.myeongji-theshar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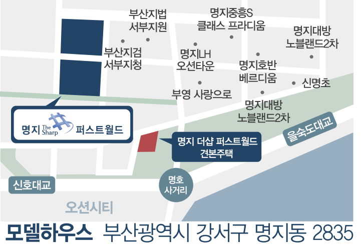

모델하우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835